

소규모 분할합병 공고

(주)포스코대우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16년 11월 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인적분할되는 (주)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을 계약하기로 결의하였으며, 2016년 11월 21일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이후 2016년 12월 13일 개최된 아사회에서 분할합병 비율이 변동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--- 아 래 ----

- 1. 분할합병방법** : (주)포스코대우가 인적분할되는 (주)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흡수합병 함
- 2. 분할합병비율** : (주)포스코대우:(주)포스코피앤에스 = 1 : 0.4387662 (분할합병비율)
※ 2016년 11월 21일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이후 2016년 12월 13일 분할합병 비율이 변동되어 1:0.4935239 → 1:0.4387662) 분할합병공고 및 분할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.
- 3.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해 (주)포스코대우에 흡수합병되는 회사(사업부문)의 현황**
 - 가. 상호: (주)포스코피앤에스 철강 등 사업부문
 - 나. 본사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
- 4. 합병기일** : 2017년 3월 1일
- 5. (주)포스코대우와 (주)포스코피앤에스의 분할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분할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,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**
-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**
 - 가. 행사절차: 2016년 11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단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- 나. 분할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: 2016년 12월 13일 ~ 12월 27일
 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- 1) 명부주주 및 실질주주: 2016년 12월 27일까지 (주)포스코대우 IR팀으로 제출 (우편 또는 팩스)
한편,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행사 가능

2) 주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(주)포스코대우 IR팀 담당자 앞
(Fax: 02-2076-3478, ☎ 02-759-3469)
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
마.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거 (주)포스코대우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내 (주)포스코대우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함.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(주)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주)포스코대우와 (주)포스코피앤에스와의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 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종류		소유주식수	

20 년 월 일

성명:

주민등록번호:

주소:

2016년 12월 13일

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

(주)포스코대우 대표이사

김 영 상